

광주지방법원 2021. 9. 29 선고 2020나6919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1. 9. 29 선고 2020나69198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0. 11. 26 선고 2020가단511308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항소인 F

변론 종결 2021. 8. 11.

판결 선고 2021. 9. 29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20가단511308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박정운

판사정영하

판사황진희